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6. 10. 26.
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0월 14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6년 10월 18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0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10월 26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 조주연

가. 제안이유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「주민투표법」에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제한하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, 제명 및 조문의 띠어쓰기 적용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표기를 정비 함

- “성명 ·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· 주소나”=> “성명 · 생년월일 · 주소나”로 함(안 제8조),
- “1인을 포함하여 7인”을 “1명을 포함하여 7명”으로 함(안 제12조)
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(안 제12조의2-신설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- 동(同) 조례안은 2016.9.13.~10.3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, 동 조례에 대한 상위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, 주요내용으로 「주민투표법」 제8조(서명 및 청구인서명명부 작성), 제9조(청구 인서명부의 제출), 제10조(청구인서명부의 열람)조문 내용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하고, 또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2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규정을 신설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붙여 쓰기한 제명 및 조문을 띄어쓰기하고, “당해”=>“해당”으로, “자”=>“사람”으로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사용하게 하는 등 관련 조문과 별지 제1호~제7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인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였고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